

대학발전총괄위원회 운영규정

제 정 2020. 10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이라 한다)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의 충실한 구현을 통해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‘대학발전총괄위원회’(이하 ‘총괄위원회’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관리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총괄위원회는 대학발전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를 총괄·조정하며, 다음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
2.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비하기 위한 각 부분 진단지표별 수행실적 총괄 관리
3. 기획처, 교무처, 대외협력처 및 산학협력단 중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
4.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체진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5.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총괄 관리
6. 지역혁신체계 및 국제화 Two Track System 구축
7.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.

제3조(구성) ①총괄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, 위원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 보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총괄위원회에는 기획연구위원을 두며, 전임 또는 비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총무처는 총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 및 직원 등 제반 행정지원을 하며, 필요한 경우 총괄위원회에는 행정지원을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자문위원회) ①위원장은 총괄위원회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.

②자문위원회는 행정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자문위원회와 관련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제5조(회의) 회의 소집은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제6조(위원회) ①총괄위원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며 각 위원회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(정부)사업관리위원회
 - 가.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운영 체계 구축
 - 나.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관리, 지원시스템 구축
 - 다.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사업 확대 등
2. 역량평가 준비위원회
 - 가. 대학 평가 관련 준비 및 관리
 - 나. 기본역량진단 운영관리, 수행체계 구축
 - 다. 책임 전문인력 육성
 - 라. 혁신지원사업 평가 지원 등

3. 지자체 협력위원회

- 가.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학 발전과 위상 강화
- 나. 지자체 추진 관련 사업 참여 및 협력모델 마련
- 다. 창업 생태계 구축 등

4. 국제화 지원위원회

- 가. Two Track System 구축
- 나. 교육부 지원 국제화 사업 확대 등을 위한 계획 및 협력방안 마련

제7조(운영세칙) 기타 총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